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아동인권교육 (Part Ⅰ)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후원 : 아산사회복지재단

목 차

Part Ⅰ. 아동인권의 이해

1. 나와 아동
   1) 나와 우리 집(아동복지시설)
   2) 우리 집의 중요한 구성원, 아동

2. 아동과 권리
   1) 인권과 아동인권
   2)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부록(참고사항)
   1) 아동복지법 발췌
   2) 아동학대근절대책(보건복지부)
   3) 법원 통고제도

Part I. 아동인권의 이해

시작하며…

서로 다른 심장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는 수백의 다른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야누스 코르착(폴란드, 1878-1943), 『아이들』〉

1. 나와 아동

1. 나와 아동

1) 나와 우리 집(아동복지시설)

(1) 나, 아동복지시설 직원

함께 생각하기

- ♥ 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두 줄 이내로 작성해 보세요.)
- ♥ 아이들과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직원'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써 보세요.

❖ **아동복지시설의 직원이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 3조 제11항〉

1. 나와 아동

1) 나와 우리 집(아동복지시설)

(1) 나, 아동복지시설 직원

함께 생각해 봅시다

- ♥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가치관 및 역할은 무엇인가요?
- ♥ 왜 그 가치관 및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 본인이 특별히 강조하는 가치관과 역할로 인해 아이들과 부딪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 나와 아동

1) 나와 우리 집(아동복지시설)

(2) 우리 집,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이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우리들의 집'과 같은 것
여기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대원칙이 존재

☞미션 :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아동복지의 기본원칙***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② 보편성의 원칙
③ 선별성의 원칙
④ 개별성의 원칙
⑤ 포괄성의 원칙
⑥ 전문성의 원칙

<출처 : 박연하, 백현옥, 조미숙,「아동복지론」, 광문각, 2009>

1. 나와 아동

1) 나와 우리 집(아동복지시설)

(2) 우리 집, 아동복지시설

함께 생각해 봅시다

- ♥ 앞의 아동복지의 기본 원칙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 우리 가족 모두가 좀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집이 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나와 아동

2) 우리 집과 아동

(1) 아동의 정의

생각하기

♥ 아동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는 아동은 어떠한 존재인지 두 줄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 있나요?

❖ **아동이란?**

성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발달단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해 성인의 연령이 특별히 다르게 정해지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1. 나와 아동

2) 우리 집과 아동

(2) 아동관의 변화

❖ 아동을 생각해보면?

보호 사랑 존엄 존중 보살핌
미래 주체 성장 가능성 미성숙

❖ 아동관의 역사적 변화

17세기 이전

작은 어른, 성인의 축소판

- 아동을 수동적이고 미숙한 존재로 인식
-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 재산으로 여김

17, 18세기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시작

- 루소의 아동중심 교육 사상

20세기

아동의 세기

- 아동기의 중요성 부각
- 아동을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

1. 나와 아동

2) 우리 집과 아동

(2) 아동관의 변화

❖ 긍정적인 관점으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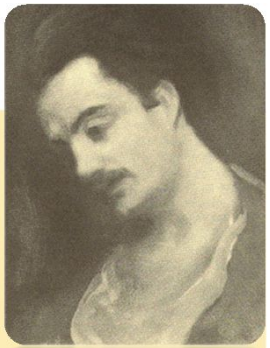
아동이란..?

- 수동적
- 미숙, 미성숙
- 성인의 미완성품
- 성인의 소유물
- 성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동에게도 가장 유익

아동이란..!

- 권리의 주체자
-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 발달과정 속에 존재
- 잠재능력을 가진 변화 가능한 존재
- 아동의 견해, 희망, 욕구는 성인과 다를 수 있음

칼릴 지브란(1883-1931) [예언자]중에서



아이들에 대하여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아이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삶의 딸이며 아들인 것.
그대들은 거쳐 왔을 뿐 그대들에게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순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마저 줄 순 없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이들 자신의 생각을 가졌으므로.

2. 아동과 권리

2. 아동과 권리

1) 인권과 아동인권

(1) 인권

생각하기

- ♥ 인권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 ♥ 성인의 인권과 비교해서 아동인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 우리 집에서 아동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아동과 권리

1) 인권과 아동인권

(1) 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여야 한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 아동과 권리

1) 인권과 아동인권

(2) 아동인권



Eglantyne Jebb
(1876-1928)
Save the Children Foundation
창설자

아동권리선언문

1. 아동은 그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 도덕적, 그리고 정신적 조건을 공급받아야 한다.
2.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병든 아동은 치료받아야 하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재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아와 부랑아에게는 안식처를 주어야 한다.
3. 재난이 닥칠 경우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4. 아동은 사회보장제도와 안전체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며, 앞으로 생계를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그들 개개인의 재능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2. 아동과 권리

1) 인권과 아동인권

(2) 아동인권



소파 방정환 (1899-1931)

한국 최초의 아동권리선언

1.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解放)하야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禮遇)를 허(許)하게 하라.
2.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解放)하야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廢)하게 하라.
3.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各樣)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行)하게 하라.

[어린이공약 3장(1923)]

2. 아동과 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1) UNCRC의 특성과 구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채택**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196개국 비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법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특징

-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협약
-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포괄하는 인권조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전문과 본문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

- 전문: 아동권리의 기본 이념과 가치, 배경
- 제1부(1조 – 41조): 아동권리를 실질적으로 규성
- 제2부(42조 – 45조): 아동권리 이행과 모니터링 관련 조항
- 제3부(46조 – 54조): 부칙(유엔아동권리협약 서명 및 비준 절차)

2. 아동과 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2) UNCRC의 원칙과 내용 : 4대 일반원칙

비차별 (Non-Discrimination) – (제 2조)	아동, 부모, 보호자의 인종, 성별, 언어 등과 관계없이 당사국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아야 함
아동최상의 이익 (Best Interest of the Child) – (제 3조)	아동의 이익과 관련한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보호, 복리증진을 최우선 고려
생명, 생존 및 발달 (Right to Life and Maximum Possible Survival and Development) – (제 6조)	생명, 생존과 발달을 위해 최대한의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생명에 관한 권리를 보장
의견존중과 참여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 (제 12조)	아동의 자유로운 참여와 아동에게 영향 미치는 모든 절차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2. 아동과 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2) UNCRC의 원칙과 내용 : 4대 기본권

생존권
Right to Survival

영양,
적절한 건강관리,
의료 혜택,
위생,
안전,
사고 예방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차별,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보호,
응급상황으로부터 보호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교육,
신체적·사회적·
정서적·도덕적 성장,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ion

아동의 견해 존중,
의사참여,
정보접근

2. 아동과 권리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1)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권리주체자 VS ❖ 의무이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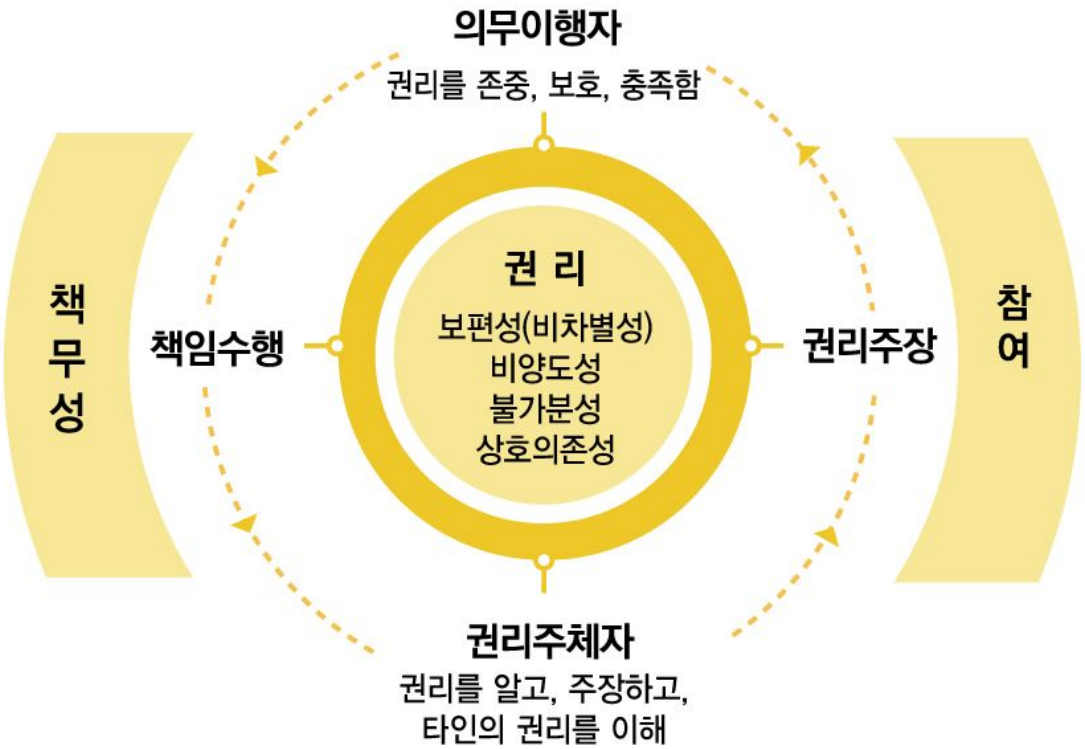
-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
- 권리주체자는 의무이행자의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음
- 권리주체자 역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음

- 권리주체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충족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
-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무이행자는 아동, 부모,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서비스제공자, 지방정부, 중앙정부, NGO와 시민사회를 포함

2. 아동과 권리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관계



출처: Save the children Sweden(2006). REGIONAL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CHILD RIGHTS BASED MONITORING AND EVALUATION TOOLS AND MECHANISMS.

2. 아동과 권리

3)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2) 의무이행자로서의 우리

☞ 의무이행자에는 우리(사회복지시설 임직원) 외 부모, 학교, 지역사회, 국가까지 포괄

☞ 아동들이 권리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하며 타인의 권리도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 필요

(3) 권리주체자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책임

★ 아동의 책임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교육 내용

-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이 아동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임을 인지
- 동료 또는 자신 보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존중과 배려
- 자신에게 위해 하지 않은 범위에서의 생활공동체 규범과 질서 존중
- 시설 내 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존중
-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적이며 합리적 타협과 조정 노력
-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참여의 가능성

부록

1)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

(1) 아동복지법	☞ 아동의 복지 보장을 목적(제1조)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 및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와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을 위한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명시 (제3조) ☞ 아동의 매매와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제17조)
(2)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조) ☞ 생명 위험, 불구 또는 난치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제5조) ☞ 상습적인 아동학대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제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한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제7조)

부록

1)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

❖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5조 제1항 신설)
2.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중앙 및 시·도) (법 제26조 제2항 개정)
3. 시설장은 신고의무자 교육 후 **보고** (법 제26조 제3항 개정)
4. 지자체 신고의무 교육 비용 보조할 수 있음 (법 제59조)
5.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과태료 3백만 원 이하 (법 제75조)

※ 아동학대특례법 : 시설종사자 처벌 1/2 가중 처벌

부록

1)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 교사직군 : 보육, 유치원, 초중등교원, 전문상담교사, 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2. 의료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3. 신설직군 :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 지원수행자
4.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 등 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부록

1)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례법

❖ 아동학대 판단 기준과 정의

손으로 엉덩이 2~3차례 때려도 학대…
"학대행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적용"

▶ 학대 사례 판단 기준

▶ 신체 학대 유형 : 책 모서리 부분으로 종아리와 손등을 때린 것, 양쪽 귀를 잡은 상태에서 아동을 밀거나 끌고 다닌 것, 머리 부위를 잡고 흔들고 밀친 것, 밀어 넘어뜨려 신체 일부를 때린 것, 손으로 엉덩이나 등을 2~3차례 때린 행위, 몸을 세게 잡아당겨 율동을 강요한 행위 등

▶ 정서 학대 :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다시 먹이거나 분무기로 몸에 물을 뿌린 경우, 귀신 흉내를 내 아동을 울린 경우, 격리행위 등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신체·정서·성적 폭력·방임·유기

부록

2) 정부, 올해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

○ 16. 3. 29.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통해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전면적 시스템 구축	※ 아동 천명 당 아동학대 발견율: 한국 1.3 vs 미국 9.1, 호주 7.8
☞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 이웃 주민의 신고 문화를 획기적으로 정착시킬 필요 증대됨
☞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	※ 아동학대 사례관리기록, 증거자료 축적 및 체계적 정보관리 위한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개편('15~'16)

부록

2) 정부, 올해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

❖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 ▶ 아동 관련 NGO와 협력하여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 등 아동권리 교육 확대실시
- ▶ 자치단체별로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 구성, 학대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활성화
  ex) 예방활동 시행, 주민들이 의심사례 자발적으로 신고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직장교육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

-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민관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 마련
  공공기관 : 판정, 사례관리 중심 / 민간기관 : 상담 및 지원

부록

2) 정부, 올해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

❖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조기발견 강화



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및 재학대 방지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복지시설 등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정기 모니터링 실시
  **다음페이지 참고*
-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상시발굴 체계 마련
  ex) 학대 고위험 아동가구 예측 모형 개발,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 학대아동피해쉼터 초기 대응 후 가정 복귀가 어려워 아동양육시설에 위탁되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등 맞춤형 돌봄 체계 필요

부록

2) 정부, 올해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아니오
14	아동의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아니오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예	아니오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요령」(2016. 03)〉

부록

3) 법원 통고제도

❖ 정의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

☞ **통고의 대상: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다음 사항에 해당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우범소년)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
③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

부록

3) 법원 통고제도

❖ 필요성

1.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해결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호자, 학교, 법원의 적절한 개입으로 소년문제 해결
2. 문제해결부담의 경감	소년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으며 범죄경력, 수사자료표에 기재되지 않아 범죄자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
3.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 제공	전문소년조사관에 의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받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진단, 심리상담조사,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활용 가능

부록

3) 법원 통고제도

❖ 절차

사건수리	조사	심리개시 결정	심리	보호처분 결정
통고접수 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할 필요를 인정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	**전문조사관**이 소년의 생활환경, 비행내용 등 수집 및 분석	**소년부판사**가 조사관의 조사를 검토하여 심리개시결정. 그사유의요지를소년, 보호자에게통지	소년이 심리기일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비공개**로 **재판**	소년법 제32조의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보호처분결정 *아래 참고

10가지 보호처분

1호 처분: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처분: 수강명령
3호 처분: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소년보호시설 감호
7호 처분: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송치

부록

3) 법원 통고제도

❖ 신청방법 및 양식

- 서면 혹은 구술로 신청
-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 생년월일,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 사유 및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 명시
- 서면으로 신청 시, 우측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지방)법원으로 발송
- 구술로 통고 시, 관할 가정(지방)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에게 진술

통 고 서 (일반용)

○○가정법원(지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직장명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표시)	□ 사회복지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 또는 직장)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
	학년, 반			
	주소			
	전화번호	( ) –		
소년의 보호자	성명		소년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 –		

통 고 사 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일시, 장소 및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 . . .

통 고 인 ○○○ ㊞

부록

3) 법원 통고제도

❖ **사례 1 : 사회복리시설에서 친구를 폭행**

구 분		내 용
1.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통고	통고일	• 2011. 3. 11.
	통고자	• 사회복리시설의 장
3. 비행사실		• 소년은 2011. 3. 7. 13:00경 소년보호시설에서 신문지로 만든 방망이로 함께 사는 다른 소년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함
4. 특별한 조사방법		•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구금)
5. 특이사항		• 소년은 이전에 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처분을 받아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퇴소하지 않고 계속 남아 교육을 받고 있다가 비행을 저지름 • 시설의 장은 다른 곳도 아닌 민간위탁시설에서는 절대로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통고제도를 이용한다고 밝힘 • 소년을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구금)하여 시설 내 다른 위탁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고, 이후 본인과 시설의 장의 원에 따라 소년보호시설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함
6. 처분 결과	처분일	• 2011. 4. 15.(처리기간 약 1개월)
	처분내역	• 장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소년 통고 실무」(2012. 04)〉

부록

3) 법원 통고제도

❖ **사례 2 : 사회복리시설에서 폭행, 무단외박 등으로 규칙 위반**

구 분		내 용
1. 사건명		• 상해 등
2. 통고	통고일	• 2011. 3. 21.
	통고자	• 사회복리시설의 장
3. 비행사실		• 소년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면서 흡연, 폭행, 무단외박, 무단외출 등 규칙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말썽을 일으킴 •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2011. 2. 23. 야간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교회에 침입해서 잠을 자고 나옴
4. 특별한 조사방법		• 전문가 진단 •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구금)
5. 특이사항		• 보육원과 같은 사회복리시설에서는 보육생들의 일탈행동을 실효적으로 저지할만한 수단이 없는데 그 성격상 강제퇴소가 여의치 않기 때문일 것임 •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통고제도는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보임 •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구금) 후 기일에서 전문가 진단을 명하고, 이후 전문가 진단결과가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
6. 처분 결과	처분일	• 2011. 7. 21.(처리기간 약 4개월)
	처분내역	•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상담치료, 외출제한 2개월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소년 통고 실무」(2012. 04)〉

부록

3) 법원 통고제도

❖ 사례 3 : 사회복리시설의 교사를 폭행, 감금하고 시설을 이탈한 사례

구 분		내 용
1.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 통고	통고일	• 2011. 6. 21.
	통고자	• 사회복리시설의 장
3. 비행사실		•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5명의 학생들이 사전에 위 시설에서 나갈 것을 모의한 후 계획한 바에 따라 한 소년은 2011. 6. 4. 01:00경 당직실 앞에서 선생님을 불러 사감실 문을 열어주자, 가지고 있던 검은색 목도리로 선생님 목을 감아 조이고, 나머지 소년들은 선생님을 둘러싼 후 합동하여 "왜 그렇게 하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선생님의 다리를 낚아채서 넘어뜨리고, 선생님의 손발을 묶고 머리와 턱을 폭행함 • 이어 소년들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선생님을 다른 방으로 옮겨 그 방의 이불장에 가두고 문을 닫으면서 "선생님 죄송해요"라고 말한 후, 시설의 방법경보장치를 해제하고 위 선생님의 가방에서 핸드폰과 돈을 꺼내어 도망침 • 위와 같이 도망친 이후 소년들은 근처 비닐하우스 안에서 잠시 숨어 있다가 2011. 6. 4. 23:00경 선생님들에 의해 발견되어 모두 복귀함 • 이후 위 시설에서는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갖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판단하고 5명 모두에게 2011. 6. 9. 24:00까지 휴가를 주고 정해진 시간까지 복귀하는 경우 원내 규칙만을 적용하고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5명의 소년들 중 2명 만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귀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복귀하지 아니함 • 이에 위 시설에서 복귀하지 아니한 소년들에 대하여 소년부에 통고함
4. 심리진행상황		• 소년보호시설 내부에 있는 소년들이 사건을 일으켰는데, 다행히도 해당 소년보호시설이 법원의 6호 처분 수탁기관이었고, 소년보호시설에서 소년들에 대한 보호의지를 갖고 있어 동일한 소년보호시설에 재위탁함
5. 처분결과	처분일	• 2011. 8. 22(처리기간 약 2개월
	처분내역	• 단기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년 통고 실무」(2012. 04)〉

질문 및 의견?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